



중앙전파관리소가 하는 일

1 디지털 전파·방송통신 재난 위기 대응

- 전파종합관제센터 운영
- 방송통신설비 안전점검 및 기술기준 적합조사
- 전파감시, 전파교란 대응
- 전파혼신처리 및 중요통신망 보호
- 전파차단장치 제조·수입 등 인가 및 사용신고
- 국내·외 위성전파감시 및 국내 위성망 보호 활동
- 불법무선국 조사·단속
- 무선국 기술기준 및 허가사항 위반 조사·단속

2 전파·방송통신 이용자 권익보호

- 불법방송통신기자재 조사·단속
- 불법감청설비 조사·단속 및 탐지업 등록·관리
- 방송프로그램 편성비율 준수 관리·감독
- 무선국 전자파 관리
- TV방송 수신장애 조사
- 정보보호 최고책임자(CISO) 지정·신고
-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제공자의 위반행위 사실조사
- 텔레비전방송프로그램 표준음량 기준 준수 조사
- 전화번호 거짓표시 금지 관련 실태검사

3 편리한 전파·방송통신 행정서비스

- 무선국 허가·검사, 방송국 검사
- 공중케이블 점검
- 방송통신사업 등록·관리
- 초고속정보통신 건물 인증
- 유료방송사업자 허가 조건 이행 점검
- 전파사용료 부과·징수
- 전기통신설비 제공 이행실태 관리
- 전파환경 수탁 측정 및 누설전자파 조사
- 정보통신방송분야 비영리법인 허가·감독

4 국제협력 및 전파교육

- 전파관리 국제협력 및 국제 표준화 활동
- 국산 전파관리시스템 해외진출 지원
- 어린이 전파교실



안전하고 편리한 전파방송통신, 함께하는 중앙전파관리소

중앙전파관리소

1947년부터 우리나라의 전파를 관리하고,
방송통신 환경을 지켜온 국가기관입니다.
국민이 편리하게 방송통신을 이용할 수 있도록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안전한 방송통신 환경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인터넷 전자민원 emsit.go.kr

민원상담 080-700-0074 / 02-3400-2000



기관명	주소	전화번호
중앙전파관리소	(05830) 서울시 송파구 송파대로 234	02-3400-2000
위성전파감시센터	(17413) 경기도 이천시 설성면 신암로 100	031-644-5900
서울전파관리소 - 서울북부사무소	(08249) 서울시 구로구 오리로 22다길 13-43 (11604) 경기도 의정부시 녹양로 152	02-2680-1700 031-849-5800
부산전파관리소	(46703) 부산시 강서구 체육공원로 6번길 67-17	051-974-5100
광주전파관리소	(58214) 전라남도 나주시 산포면 매성길 178-24	061-330-6800
강릉전파관리소	(25428) 강원도 강릉시 연곡면 성안길 40-31	033-660-2980
대전전파관리소 - 당진사무소	(35283) 대전시 서구 신갈마로 86번길 64 (31754) 충청남도 당진시 우강면 덕평로 730	042-520-4100 041-360-2800
대구전파관리소	(42043) 대구시 수성구 동원로 90	053-749-2800
전주전파관리소	(55316) 전라북도 완주군 봉동읍 둔산3로 114	063-260-0070
제주전파관리소	(63037) 제주시 애월읍 도치돌길 385	064-740-2800
청주전파관리소	(28567)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사직대로 157길 30	043-261-5811
울산전파관리소	(45013) 울산시 울주군 서생면 위곡2길 157-6	052-231-8810

안전하고 편리한 전파방송통신, 함께하는 중앙전파관리소

올바른 무선국 이용 안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중앙전파관리소

무선국, 허가·신고하고 사용합시다.

☎ 생활무전기를 제외한 모든 무전기와 전파응용설비(주파수 : 9㎐ 이상, 전력 : 50W 초과)는 허가(신고)하고 사용하여야 합니다.

신고하고 개설할 수 있는 무선국

간이무선국 중 휴대용 무선기기, 이동국, 육상이동국용 무선설비 중 휴대용 무선기기(차량, 선박 등 이동체에 설치하는 경우 제외)

신고하지 않고 개설할 수 있는 무선국

적합성 평가를 받은 생활무선국용 무선기기 무선랜, 무선전화기, 무선도난 경보기, 완구 조정기 등

☎ 허가 신고 방법은?

무선국 신청서류를 관할 지방전파관리소로 제출하거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자민원센터(www.emsit.go.kr)로 신청

☎ 왜 허가를 받아야 하나요?

무선국을 허가 또는 신고 없이 사용할 경우 전파 질서를 어지럽히고 타인에게 혼신을 주는 등 큰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 허가 또는 신고하지 않고 무선국을 개설 또는 운용하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벌금, 과태료 등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불법무선국을 운용하지 맙시다

허가 없이 무선국을 개설하거나 운용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신고하지 아니하고 무선국을 운용하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허가 또는 신고사항을 벗어나 운용하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해외 직구 무선기(무선기기) 사용 시 유의 사항

개인이 사용할 목적으로 해외에서 직접 반입한 기자재는 1인당 1대에 한하여 적합성평가가 면제됩니다. 다만, **국내 기술기준(주파수, 출력 등)에 적합해야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아날로그 생활무전기 이용종료 연장 안내

400㎐ 대역 생활무전기 이용자 보호를 위해 당초 '23년말로 예정되었던 이용종료 시기를 '26년 말까지 3년 연장하였습니다. 다만, 생산·수입·판매는 '24년부터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불법무선국(무선기기) 사용 사례

01

국내 기술기준에 부적합한 외국산 생활 무선기 사용

- 주파수, 출력 등이 국내 기술기준에 부적합한 외국산 생활 무선기(해외 직구 등) 사용 시 벌금 또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하지만 적합성평가를 받은 생활무전기는 허가·신고 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생활무전기는 확장(불법)주파수를 사용하거나 출력을 높여서 사용할 경우 과태료 대상입니다.
- 고정형 차량용 무선기는 허가를 받고 사용하여야 합니다.

02

700㎐ 대역 무선마이크 사용

- 700㎐(740~752㎐) 대역에서 사용하고 있는 무선마이크는 유효기간 종료('20.12.31.) 이후 사용하다 적발되는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따라서 기술기준에 적합한 70㎐, 170㎐, 200㎐, 900㎐ 대역 등의 무선마이크로 교체하여야 합니다.

03

불법 아날로그 (디지털·아날로그 겸용 포함) 무선기 사용

- '19년 1월 1일부터 아날로그(디지털·아날로그 겸용 포함) 무선기는 신규로 개설할 수 없으며, 허가(신고)받지 않고 사용하는 경우 과태료 또는 벌금이 부과됩니다.
- 다만, '18년 말까지 재허가(신고)를 받은 무선기는 수명만으로 시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04

옥외용 레벨측정레이다 불법 운용 사용

- 옥외용 레벨측정레이다 대역(76~81GHz)이 아닌 5GHz, 9GHz, 26GHz 등의 주파수 대역(차폐된 옥내용으로만 사용 가능)을 사용하는 옥외용 레벨측정레이다 설치·운용시 과태료 부과 대상입니다.
- 다만, 예산 및 대체장비 확보가 어려워 즉시 사용중지가 곤란한 점 등을 감안하여 '25년 8월 31일까지 유예하오니 해당시설을 설치 운용중인 기관(업체)은 유예기간 종료 전까지 자진철거 또는 국립전파연구원의 인증을 받은 적법한 제품으로 교체하시기 바랍니다.

※ 유예기간내 전파 혼·간섭 또는 전자파 장애를 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즉시 조치함을 알려드립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중앙전파관리소

홈페이지: crms.go.kr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자민원센터: emsit.go.kr
전파·방송통신민원: 080-700-0074

